

# 증 권 선 물 위 원 회

## 심 의·의 결

2021. 1. 6.

안건번호 2021 - 제4호

안건명 甲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 
과징금부과조치에 관한 건

조치대상자 甲

의결연월일 2021. 1. 6.

## 주 문

1.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조치자 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.

가. 과징금액 : 금 45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(60일)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1. 기초사실

### 가. 피조치자의 지위

甲은 일반 투자자로서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임

### 나. 행위사실

甲은 2016.3.11.~2018.1.11. 기간 중 A사 선물 201604 등 5개 종목 총 99,418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2,537회에 걸쳐 268,931계약의 허수성 호가를 제출한 후, 해당 호가를 지속·반복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동 종목들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
## 2. 위법성 판단

### 가. 관련 법규정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는 “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고 규정하고, 제429조의2는 동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
<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거 조항>

◆ 제178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)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2~4. (생략)

◆ 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)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나. 피조치자 행위의 위법 여부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,

甲은 본인의 개별주식 선물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및 청산함으로써 단기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수의 선물 종목에 대한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음

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, 甲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

### 3. 처 분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79조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함

#### 가. 과징금 산정기준

甲의 과징금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3.바.(1)에 따라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(미실현이익 포함)으로 산정하되,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 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산정하는바, 기준금액을 30,000,000원으로 함

#### 나. 부과 비율의 산정

(i) 甲의 위반기간 해당종목 일평균 위반횟수는 84회(중)이며,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은 15.71%(상)에 해당되며, 파생상품의 경우 두 가지 판단항목중 '상', '중'이 각 1개이면 전체 중요도는 「상」에 해당되므로,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.나.(3)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중요도 '상'에 해당함

(ii) 甲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.다.에 따라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

#### 다. 부과 과징금의 결정

위반행위의 중요도가 '상'이고, 상향조정사유에 해당되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4.가.(4)에 따라 기준금액 30,000,000원에 부과비율 100분의 150을 곱하여 피조치자에게 45,000,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

#### 4. 결론

피조치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29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증권선물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21년 1월 6일